

##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#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정 2011년 1월 10일 조례 제1128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오산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** 근로자, 사용자, 지역주민 및 오산시(이하 “지역 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설치 및 기능)**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

**제4조(구성 등)**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3.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 · 고용 · 경제 ·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4. 지방 고용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##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④ 시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.

**제6조(위원의 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실무협의회)**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.

**제9조(의견청취 등)**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전문가 또는 노사 대표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0조(성실이행의무)**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, 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기관, 단체 등에서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,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오산시위원회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**제12조(운영세칙)**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